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56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 강대식 · 송언석 · 정동만

이종배 • 유용원 • 조지연

강선영 · 강승규 · 김용태

김예지 · 최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 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를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③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	
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	
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병역법」 <u>제11조의2에 따</u>	10제11조의2 및
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	제77조의4에 따라 병무청장
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정검사, 병적 관리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	
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	
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